

수원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1836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승호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6. 1.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92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00,170,145원 및 그 중 99,511,780원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1.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K1) 은 2018. 2. 27. 원고가 K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K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 중 주요 부분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차용증

일금 4억 원정(400,000,000)을 차용함에 있어 경북 칠곡군 D 아파트 신축공사 E동의 F호, G호, H호, I호를 4억 원에 대해 변제가 안될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변제 날짜는 차용일로부터 60일로 정하고 아파트 PF 자금 집행시 지불한다.

1) 1억4천만 원은 차용일후로부터 20일경 사금융 70억 대출시 지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2018. 2. 27. 피고에게 50,000,000원, 2018. 3. 20.

47,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이하 ‘2018. 2. 27.자 대여금’ 및 ‘2018. 3. 20.자 대여금’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K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금 4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은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K를 주채무자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

이 사건 대여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다. 따라서 그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는 ‘차용인’ K이 4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며, 피고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그 문언상 K이 확정된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돈을 투자하여 원고와 피고 등이 어떠한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가 사업의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정하였다는 점, 당사자 사이에 투자로 인한 이익·손실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에 맞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2) 피고의 대여금 반환 범위

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8. 2. 27. 50,000,000원, 2018. 3. 20. 47,000,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금액

400,000,000원 중 140,000,000원은 차용일로부터 20일 후를 그 변제기로, 나머지 260,000,000원은 차용일로부터 60일 후를 그 변제기로 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대여금이 실제 교부된 날짜를 함께 고려하면, 원고, 피고 및 K은 이 사건 대여금 중 2018. 2. 27.자 대여금 50,000,000원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20일 후인 2018. 3. 19.을 변제기로 하여 1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정하고, 2018. 3. 20.자 대여금 47,000,000원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60일 후인 2018. 5. 19.을 변제기로 하여 26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2조 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18. 2. 27. 50,000,000원을 대여하고 20일 후 140,000,000원을, 2018. 3. 20. 47,000,000원을 대여하고 60일 후 260,000,000원을 각 반환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3)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에 따라 계산하면 2018. 2. 27.자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8. 3. 19.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은 50,657,534원(= 원금 50,000,000원 + 이자 657,534원⁴⁾),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8. 3. 20.자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8. 5. 19.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은 48,854,246원(= 원금 47,000,000원 + 이자 1,854,246원⁵⁾)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2018. 2. 27.자 대여금, 2018. 3. 20.자 대여금 및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까지 발생한 이자 이외에 위 각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18. 2. 27.자 대여금의 대여원리금 50,657,534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2018. 3. 1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2018. 3. 20.자 대여금의 대여원리금 48,854,246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5.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합5867)을 하여 2019. 2. 26.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2,415,23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9라20332)하여 2019. 5. 3.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5,23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원고의 재항고(대법원 2019마5723)를 거쳐 2019. 9.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2019. 9. 4. 확정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채권이 2018. 3. 19. 및 2018. 5. 19.에 각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보증금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2019. 9. 4.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3. 3.자 준비서면이 2023. 3.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99조,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위 대여원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6,873,600원(= 3,408,113원6) + 3,165,487원7))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비용액상환채권 6,215,235원은 위 지연손해금에 전액 충당되어 상계적상일 2019. 9. 4.을 기준으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채권은

658,365원(= 6,873,600원 - 6,215,235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170,145원[=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합계 99,511,780원(= 50,657,534원 + 48,854,246원) + 상계충당 후 남은 지연손해금 658,365원] 및 그중 99,511,780원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9. 9. 5.부터 이자제한법의 제한 범위 내에서의 약정이율인 연 24%(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충용, 판사 민정석, 판사 조효정

1) 갑 제1호증(차용증)에는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는 ‘K’의 오기로 보인다.

2) 원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18. 2. 27. 피고에게 50,000,000원, 2018. 3. 20. 피고 대표이사 L에게 16,000,000원, K의 아들 M에게 31,000,000원을 주었다고 하였으나,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 돈을 모두 피고에게 주었다고 하였고, 여기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3) 2018. 2. 27.자 대여금에 관한 이율은 연 3,285%〔≒ (1억 4,000만 원-5,000만 원)÷5,000만

원×365일/20일]이고, 2018. 3. 20.

자 대여금에 관한 이율은 연 2,756% [= (2억 6,000만 원-4,700만 원)÷4,700만 원×365일/60일]이다.

$$4) = 50,000,000\text{원} \times 24\% \times 20 \div 365$$

$$5) = 47,000,000\text{원} \times 24\% \times 60 \div 365$$

6) 50,657,534원에 대한 2018. 5. 1.부터 2019. 9. 4.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0,657,534원×5%×492일/365일)

7) 48,854,246원에 대한 2018. 5. 20.부터 2019. 9. 4.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8,854,246원×5%×473일/365일)